

공 항 시 설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토교통부 (공 항 운 영 과)
연 월 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공항운영 과정에서 설치가 가능한 장애물을 정비하고,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의 신설 등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9373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안정성 검토방법 신설(안 제8조의2, 제22조의2 신설)

상위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제거 여부 및 안전성 검토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비행절차 설정기준에 따르도록 그 방법을 구체화
나. 장애물 설치 협의대상 확대(안 제22조)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협의대상에 신설하고, 건축 단계별 현황통보를 3회에서 2회로 축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물 검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에 대한 제거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대상은 장애물로 본다.

제22조의 제목 “(장애물의 제한에 관한 협의)”를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비행안전 검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대상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 본다.

제23조 중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8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9항”을 “법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비행안전”을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비행안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항공학적 검토기준”을 “비행안전 확인기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항공학적 검토기준”을 “비행안전 확인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제11호가목 중 “제16조제14호”를 “별표 1 제14호”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장애물의 기준 (제22조제1항제6호 관련)”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장애물의 기준 (제22조제1항제6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 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구조물”을 “기준 장애물(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변경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변경고시)된 존치장애물 중 수목을 제외한 장애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나목1) 중 “장애물(수목을 제외한 자연 장애물 또는 비행장 설치의 고시 당시 건설 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건축물·구조물”을 “기준장애물(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변경고시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변경고시)된 존치 장애물 중 수목을 제외한 장애물”로, “같다”를 “이 호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목 5)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별표 7에 따른 비행안전 확인결과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 중 “판단되는”을 “판단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설정되거나 설정 예정인 비행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판단되는”을 “판단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설정되거나 설정 예정인 비행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판단되는”을 “판단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설정되거나 설정 예정인 비행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판단되는”

을 “판단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설정되거나 설정 예정인 비행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 중 “판단되는”을 “판단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설정되거나 설정 예정인 비행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판단되는”을 “판단되거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및 접근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설정되거나 설정 예정인 비행절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제2호가. 위반행위란 2) 중 “시각보조시설”을 “시각지원시설”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안테나 등 그 밖에 구조물”을 “건축물·구조물 등의 높이보다 높은 승강기, 굴뚝, 저수조, 안테나 등의 건축설비와 환기시설물 등의 부속구조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안테나 등 그 밖에 구조물”을 “건축물·구조물 등의 높이보다 높은 승강기, 굴뚝, 저수조, 안테나 등의 건축설비와 환기시설물 등의 부속구조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공항시설법」 제34조제4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공항시설법」 제34조제9항”을 “「공항시설법」 제3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안테나 등 그 밖에 구조물”을 “건축물·구조물 등의 높이보다 높은 승강기, 굴뚝, 저수조, 안테나 등의 건축설비와 환기시설물 등의 부속구조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u> <u>「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u> <u>“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u> <u>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u> <u>별표 2와 같다.</u> <u><신 설></u>	<u>제4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u> <u>「공항시설법 시행령」 (이하</u> <u>“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u>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u> <u>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u> <u>다.</u> <u>제8조의2(장애물 검토) 법 제4조</u> <u>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u> <u>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또는</u> <u>비행장 주변의 장애물에 대한</u> <u>제거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u> <u>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u> <u>우 협의대상은 장애물로 본다.</u>
<u>제22조(장애물의 제한에 관한 협</u> <u>의)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u> <u>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u> <u>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u> <u>말한다.</u> 1. · 2. (생략) 3. <u>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u> <u>서 공항 또는 비행장 운영에</u> <u>필요한 시설</u> 4. <u>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인</u> <u>위적으로 제거하기 곤란한 산</u>	<u>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u> <u>의)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u> <u>-----</u> <u>-----</u> <u>----.</u> 1. · 2. (현행과 같음) 3. <u>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u> <u>기계</u> <u><삭 제></u>

악 및 구릉

5. · 6. (생 략)

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2. (생 략)

③ (생 략)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설치·변경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생 략)

2. 최고높이 도달 후: 7일 이내

3. (생 략)

<신 설>

4. ·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2조의2(비행안전 검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항시

제23조(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u>법 제34조제1항제2호</u>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이란 별표 8의 검토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제25조(장애물의 현황 관리) <u>법 제34조제8항</u>에 따른 장애물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제26조(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u>법 제34조제9항</u>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 3. (생략)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u>법 제34조제9항</u>	<u>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지장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대상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 본다.</u> 제23조(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u>법 제34조제1항제5호</u>----- ----- ----- -----. 제25조(장애물의 현황 관리) <u>법 제34조제3항</u>----- -----. 1. 2. (현행과 같음) 제26조(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u>법 제34조제4항</u>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 신청) ① <u>법 제34조제4항</u>
--	---

에 따른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의결결과 및 비행안전에 관한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①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의한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에 따른 비행안전-----

-----.

1. 2.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34조 제1항제5호-----

-----.

제31조(공항운영규정의 수립 인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비행안전 확인기준-----

-----.

④・⑤ (생 략)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 ①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공항운영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항공학적 검토기준</u>에 의한 검토 결과에 따라 그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로써 공항운영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공항운영규정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공항운영규정의 변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비행안전 확인기준</u>----- ----- ----- ----- ----- -----. ④ ~ ⑧ (현행과 같음)
--	--